

(○ ○ 읍 · 면 · 동)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민방위대 편성 사실 · 소속 및 임무 통지서

귀하께서는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평 상 시 임 무	민 방 위 사 태 발 생
○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· 운영 ○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○ 공동지하양수시설 · 대피소 ·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· 관리 ○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· 장비의 비축 ○ 등화 · 음향 관제의 훈련 ○ 자체 시설의 보호 ○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 · 관리 ○ 민방위 교육훈련 ○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· 수습 ·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	○ 경보 및 대피 ○ 주민통제 및 소산(疏散: 분산시킴) ○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○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○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○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○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○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○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끝.

읍 · 면 · 동 장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